
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요령

2011. 6.

방송통신위원회

목 차

I. 재허가 계획	1
① 개요 및 대상 사업자	1
② 재허가 신청서 접수	1
③ 재허가 기준 및 허가증 교부	2
④ 추진일정	3
⑤ 유의사항	3
II. 재허가 심사	4
① 심사방향	4
② 심사절차	4
③ 심사기준 등	6
III.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	7
① 신청서류 및 제출부수	7
②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	8
IV.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	10

■ 첨부 : 신청서류 작성양식

I. 재허가 계획

① 개요 및 대상사업자

가.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전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수도권역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전파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재허가 심사

나.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

사 업 자 명	대 표 자	허가만료일	신청기한	방송구역
한국방송공사	김인규	'11.12.31.	'11.06.30.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(주)문화방송	김재철	'11.12.31.		
(주)에스비에스	우원길	'11.12.31.		
(주)와이티엔디엠비	배석규	'11.12.31.		
한국디엠비(주)	김경선	'11.12.31.		
유원미디어(주)	주상균·박경수	'11.12.31.		

② 재허가 신청서 접수

가. 제출서류(세부내역 'Ⅲ.' 참조)

- o 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 1부(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9호 서식)
- o 허가증 사본 1부
- o 방송사업 운영실적서 1부(방송보조국은 제외)
- o 무선설비의 시설 개요서 1부(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18호서식)
- o 무선설비의 공사 설계서 1부(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0호서식)
- o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(방송보조국 및 소출력방송국은 제외)
- o 시설설치계획서 1부
- o 기타 첨부서류

나. 접수처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

○ 우)110-777,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11층

☎ 02 - 750 - 2453 ~ 4

③ 재허가 기준 및 허가증 교부

가. 재허가 기준

- 종전 허가시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'재허가 거부',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정도 등을 심사한 후, 필요시 '조건부 재허가'를 할 수 있음
- 총 1,000점 만점 중,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'재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'조건부 재허가' 또는 '재허가 거부'를 할 수 있음
-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,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%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- 시청자권익보호, 공적책임 실현,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

※ 전파법시행령 개정(2010.7.26)에 따른 재허가 기간

전파법시행령 제36조(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)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,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

나. 허가증 교부

- 재허가 심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,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재허가 거부사유 등 그 결과를 통보함

4 추진일정

일 정	주 요 내 용
6 ~ 9월	·재허가 신청관련 공고 및 사업자 통보 ·재허가 신청서 접수(6월) ·시청자의견 접수(9월) - 시청자의견 청취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서 방송을 통해 공지하고, 청취기간도 1개월로 연장하여 심사항목에 반영
10월	·2011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11월	·2011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심의·의결

※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5 유의사항

가. 재허가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고, 특히 향후 사업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여 작성할 것

나.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,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

다.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라. 제출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음

II. 재허가 심사

1] 심사방향

-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조건 이행 여부, 향후 사업계획 평가

<2008년 재허가시 이행각서>

구 분	내 용
공통사항	◦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난시청(음영지역) 해소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증 교부 이전에 이행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한국방송공사	◦현재 미운영중인 라디오 채널에 대한 임대채널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완료 하고, 향후 유헴(有休)채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널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증 교부 이전에 이행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한국디엠비, 유원미디어	◦사외이사 참여 등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향후 증자 계획 등 재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허가증 교부 이전에 이행각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.

2] 심사절차

가. 신청서류 접수

-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

나. 재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처리

- 시청자 의견 청취

-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

- 신청서류 보완

-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 제출서류 징구 및 보완사항 통보

- 현장실사

-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, 현장실사 실시

다. 재허가 심사

○ 방송사업 심사

-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

※ 의견청취

- 청취내용 :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
- 참석대상 : 법인 대표자, 편성책임자 최다출자자(또는 대리인)
- 청취일시 :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

○ 방송국 기술심사

- 방송국 허가·검사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전담반 구성을 통해 무선국의 개설조건 및 기술기준, 방송국 운용능력 적합 여부 심사

라. 방송통신위원회 심의·의결

- 심사위원회의 방송사업 심사 결과와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

마.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

- 허가증 교부 또는 재허가 거부 통보, 심사결과 공표

③ 심사기준 등

가. 방송사업 관련 심사기준

심사항목	평가지표	배점	비고
I. 방송평가	계량	400	방송법 제17조제3항
II.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	계량비계량	600	
1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	비계량	170	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
2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	비계량	80	방송법 제10조제1항
3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	비계량	50	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
4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비계량	70	방송법 제10조제1항
5. 재정 및 기술적 능력	비계량	170	방송법 제10조제1항
6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	비계량	40	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
7.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	비계량	20	방송법 제17조제3항
8.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	계량	감점	방송법 제17조제3항
합계		1,000	

※ 감점처리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나. 방송국 기술심사 사항

- 전파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방송국 재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(전파법 제21조) 및 무선국의 개설조건(전파법시행령 제32조) 충족 여부 심사
- ‘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’와 ‘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’, 첨부도면에 따른 재허가 신청재원과 기존 허가사항의 변동여부 및 적정여부 심사

Ⅲ.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

① 신청서류 및 제출 부수

가. 방송사업 심사관련 서류(뉴미디어정책과 담당)

1) 신청서류 구성

- ① 신청공문
- ②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(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9호 서식)
- ③ 서약서
- ④ 일반현황
- ⑤ 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
- ⑥ 방송국 허가증 사본
- ⑦ 주간기본편성표
- ⑧ 첨부서류
 - 법인등기부등본 1부
 - 재허가 신청일 현재,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(대표자 변경시 재 제출)
 - 2009년, 2010년 감사보고서 각 2부

2) 제출부수

구분	원본	사본	CD	비고
최초 접수시	1	4	2	신청서 5부 + CD 2개 제출
보정 후 재접수시	원본 보정	14	2	신청서 14부 + CD 2개 제출

주1) ⑧첨부서류를 포함한 기타 부속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3부를 제출

주2) 방송국 허가증 등 한글 파일로 변환이 어려운 문서의 경우,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

나. 방송국 기술 심사관련 서류(전파방송관리과 담당)

1) 신청서류

- ①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(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18호 서식)
- ②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(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0호 서식)
- ③ 시설설치계획서 1부
- ④ 공사설계서 첨부자료 각 1부
 -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
 -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
 -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
 -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
 - 공중선계 구성약도
 - 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
 -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

② 작성 및 제출요령

가.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,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

나. 제출서류는 A4 용지(210×297mm)를 사용하며, 반드시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(양면 인쇄 가능)

다. 지도·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

라.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“원본”, “사본” 임을 표시하고, 표지 안쪽 면에 각각 “원본임이 틀림없음”, 또는 “원본과 동일함”과 신청법인명,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함

○ 사본의 경우,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□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,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입함

마. 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의 이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출

바.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,
기타 적의 산정하여 적용한 때에는 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

- 물가 : 2011년 작성일 현재가격
- 환율 : 재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 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
은행의 매매기준율
- 차입금이자율 :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
당좌대월 이자율
- 예금이자율 : 차입금이자율에서 2%를 차감한 이자율
- 감가상각 :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 적용
- 제세공과금 :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·법인세·관세 등 관련
법령의 규정 적용

IV.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

1. 방송국 재허가신청서

- ▶ 재허가신청서는 『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

1. 신청인

- 법인명(대표자명), 법인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, 소재지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 항목에 해당내용을 기재

2. 허가사항

- 방송국의 명칭, 허가번호, 최초허가연월일, 방송구역,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항목은 해당사항을 기재
- 방송사항(사업종류), 기타 허가의 주요내용 항목은 “방송국 허가증 사본 참조”라고 기재

3.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

-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: 「해당사항 없음」으로 기재
-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: 「별첨」으로 기재 후 운영실적서 해당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

4.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

- 각각의 항목에 「별첨」으로 기재 후 운영실적서 해당항목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

② 서약서

-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, 날인

③ 일반현황

1. 개요

- 방송사업자(방송국)의 설립목적, 운영방향, 방송현황 등을 간략하게 기술

2.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

-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

3. 연혁

-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

4. 조직도

- 해당 법인의 조직도를 첨부
※ DMB 담당부서 별도 표시

5. 법인현황

-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하며, 주주현황은 5%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중심으로 기재하되, 그 외의 주주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

④ 방송(DMB)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

1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

가.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계획

- 1)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
- 2)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

※ 직접사용채널 한정 및 DMB채널을 통하여 송출된 실적 및 계획

나. 재난방송 편성실적 및 계획

- 연도별 재난방송 실시 건수 및 편성 계획을 기술

※ 직접사용채널 한정 및 DMB채널을 통하여 송출된 실적 및 계획

다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관련 이행실적

- o 재허가 시 제출한 공적책임 실현계획,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방안,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안에 관한 내용, 자체심의기구 운영 실적 등에대한 이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

라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관련 실현계획

- o 방송의 기본이념 및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(※ 자체심의기구 운영 계획을 포함할 것)

마.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(DMB 관련 한정)

- 1)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
- 2)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
- 3)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(상위 3대 사유)
- 4)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(상위 3대 사유)

바. 시청자 참여보장 방안

- 1) 시청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시행 내역
- 2) 향후 5년간 시청자 참여기회 보장 방안

사.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

- 1)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
- 2)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활용 내역
- 3)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
- 4) 시청자위원회 위원명단
- 5) 향후 5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

아. 방송법령,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

- 재허가일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방송법, 기타 법령 준수 현황
- 방송법 위반사항 중 과태료, 과징금 처분 내역
-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위반사항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, 경고, 주의 등
- 방송법 하위법령(시행령, 규칙, 고시, 기준 등)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
- 기타 법령(공정거래 및 조세 관련 법령 등)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용 및 처분 내역

2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

가. 채널구성 계획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

- 1) 채널 구성 관련 현황
 - ① 채널 구성의 기본 방향, ② 채널 운용 내역, ③ 채널 임대 조건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

2) 향후 5년간 채널 구성·운용 계획

- 채널 구성·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, 향후 계획을 연도별로 기술
- 임대채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대조건과 채널임대에 있어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

나.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

1) 분야별 방송비율

- 직접사용채널의 연도별 보도, 교양, 오락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편성 비율을 작성

2) 프로그램 제작 주체별 방송 현황

- 직접사용채널의 제작 주체별 방송현황을 연도별로 작성

3) 프로그램 제작 관련 투자 실적

- 직접사용채널의 제작 관련 투자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

다. 향후 5년간 편성계획

- 방송편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, 채널별로 방송분야별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계획,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

라. DMB용 신규 방송프로그램 제작(공동제작 포함)·편성 실적 및 계획

- 직접사용채널에서 DMB용 프로그램을 신규로 제작하거나 편성한 현황 및 계획을 작성

3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

가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참여(기여) 실적

-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실적을 작성

나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

- 향후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을 기술

다. 시청자 의견 청취 관련(재허가를 위한 시청자 의견 청취 시)

- 방통위가 재허가 신청서 접수 후 해당 방송사에 재허가를 위한 시청자 의견 청취 관련 안내 및 고지 요청시 이행 내역을 기술

4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

가. 사업운영의 기본방향

-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상세하게 기술

나.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(각각 구분 작성)

- 경영의 효율성(부문 통합 등)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기술
- 경영의 투명성(사외이사 등)에 관한 실적 및 계획을 기술
- ※ 실적 및 계획을 알기 쉽도록 작성 요망

다.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(DMB 별도 기술)

- 1) 직급별 인력 구성 현황
- 2)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
- 3)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현황

라.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(DMB 별도 기술)

- 1)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
- 2) 인력 운용계획
- 3)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

마.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

- 방송운영,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현황 및 계획을 기술

5. 재정 및 기술적 능력

가. 재무구조 : DMB를 구분하여 별도 기술

-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최근 2년간 요약 대차대조표, 요약 손익계산서, 재무비율을 작성
- 매출액은 매출액 총액 기입 후 방송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매출액을 구분하여 작성
- 총자산이익률 = $\text{당기순이익} \div \text{총자산평균}\{(\text{연말} + \text{연초}) \div 2\} \times 100$
- 자기자본이익률 = $\text{당기순이익} \div \text{자기자본평균}\{(\text{연말} + \text{연초}) \div 2\} \times 100$
- ※ Excel 파일 작성, '09 ~ '10년 감사보고서 2부 별도 첨부

나. 수입현황(DMB부문에 한정)

- 수입 유형별로 작성

다. 주주 관련

- 1) 주주현황(작성일 기준)
- 2) 주주 변동내역
- 3)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

라. 추정 재무제표(2011~2016) : DMB를 구분하여 별도 기술

- 2011년 및 향후 5년간의 추정 재무상태, 자금조달 계획 등을 작성
- ※ Excel 파일 작성, 연도별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별도 첨부

마. 추정수입(DMB부문에 한정)

- 수입 유형별로 작성

바. 난시청(음영지역) 해소 실적 및 계획

- 난시청(음영지역) 지역 해소계획을 작성
- ※ 사업자별 수도권 난시청지역 현황을 확인 후 명시(그림 또는 한글)

사. 방송시설에 대한 구축·투자 실적 및 계획

1) 방송시설에 대한 구축·투자 실적 및 세부내역

2)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세부내역

※ 방송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 DMB에 관한 사항을 별도 기술

3)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및 계획

○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및 계획을 작성

아.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

6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

가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

1)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

2)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

3)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실적

4) 기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대비 실적

나. 방송발전을 위한 향후 지원계획

7. 허가 또는 승인 조건,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

가. 행정처분 현황

○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 받은 행정처분명(시정 명령·과징금·과태료 등), 위반일자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

나. 재허가 조건 이행 현황

○ 각 사업자별 허가조건과 이행여부, 미이행시 미이행 사유 등을 기재

다. 이행각서(이행약정서) 제출사업자 이행현황

- 사업자별 이행각서(이행약정서) 제출내용과 이행결과, 미이행시 미이행 사유 등을 기재

8.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

- 방송관련 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시정명령 처분 및 이행 여부

⑤ 방송국 허가증 사본

- 재허가 신청 대상 방송국의 허가증 사본 첨부

⑥ 주간기본편성표

- 전체 운용채널(TV, 라디오, 데이터방송) 주간 기본편성표 제출

※ 2011년 신청일 기준, A4 용지 규격. 끝.